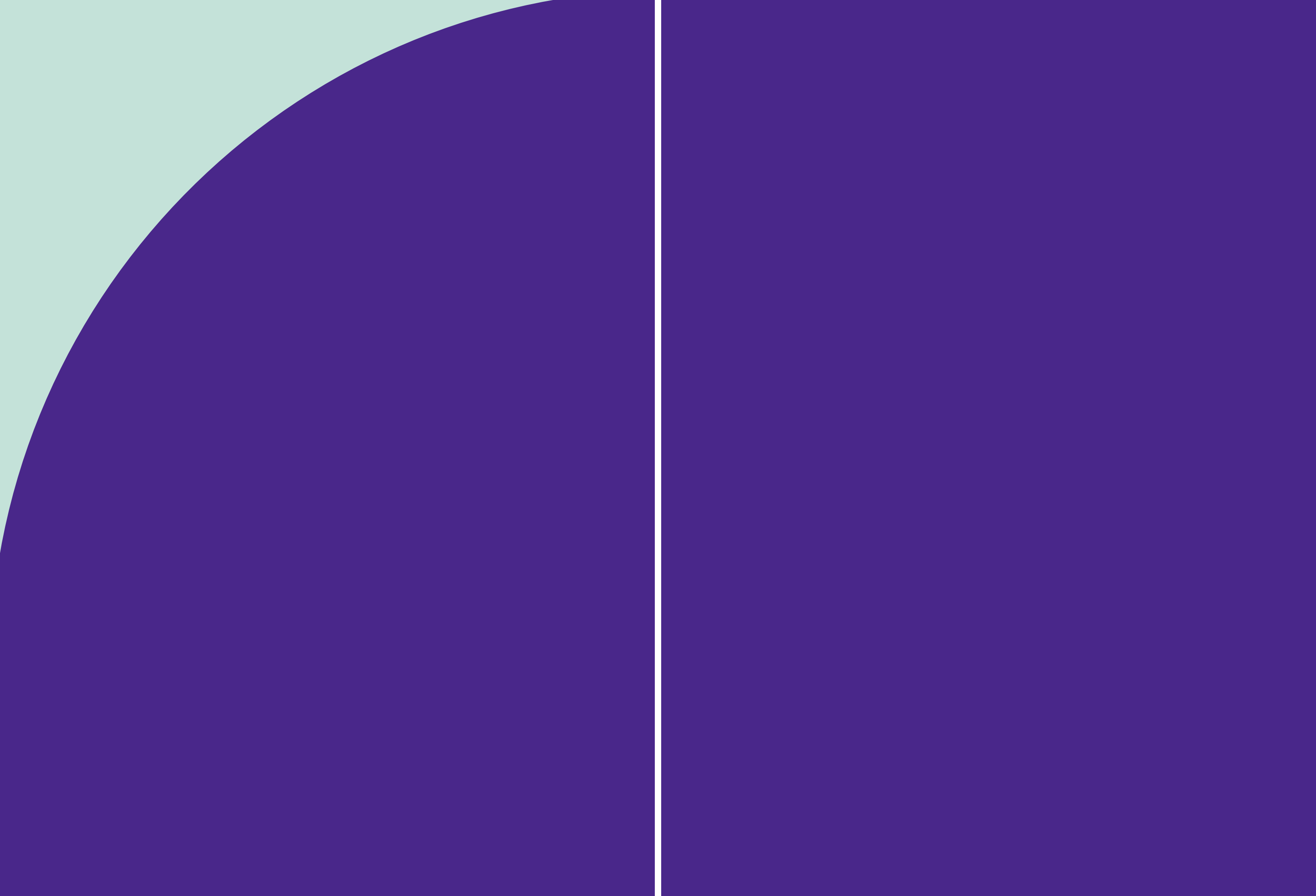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8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안내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한 눈에 보기

구분	사업명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	기타	접수기간	접수방법	
	문학 첫 책 발간지원							●				
	문학 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	●	●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1차	예술작품지원	●	●	●	●	●	●			접수 마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	●	●	●	●	●	●			
	예술축제지원	●	●	●	●	●	●	●	●			
	민간창작공간 (작업실, 연습실) 운영지원	●	●	●	●	●	●	●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	●	●	●	●	●	●				
2차	최초예술지원	●	●	●	●	●	●	●		2.28(수) - 3.19(월)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서울청년예술단	●	●	●	●	●	●	●				
	청년예술공간지원	●	●	●	●	●	●	●	●			

-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은 예술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2019년 이후 신규공모 진행 예정

- 유망예술지원사업은 2년연속 지원으로 2018년도는 2017년 선정사업의 2차년도 진행, 신규공모는 2019년부터 진행

2018년 주요 변경 내용

- 03 2018년 주요 변경 내용
- 04 2018년 예술지원사업 공통안내사항
- 07 청년예술지원사업 사업개요
- 10 최초예술지원사업
- 16 서울청년예술단
- 21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 특성 고려 1,2회차 공모 실시

공모	2017년	공모	2018년
1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축제지원 예술가 지원	1차	예술작품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가 지원 민간창작공간운영지원
2차	예술작품지원 유망예술지원		예술축제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3차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최초예술지원 등)	2차	청년예술지원 - 최초예술지원 - 서울청년예술단 - 청년예술공간지원
별도공모	민간창작공간운영지원 장애인 예술창작활성화 지원		

청년예술지원사업

구분	2017년	2018년(변경)													
최초 예술 지원	대상 공공 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39세 이하 청년예술인(단체) 또는 데뷔(설립) 10년 이하 예술인(단체)	공공 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39세 이하 또는 경력 10년 이하 예술인(개인) ※ 프로젝트팀의 경우, '대표자'격의 구성원이 개인으로 신청 ※ 단, 문학은 39세 이하(1980.1.1. 이후 출생) 미등단 작가에 한함													
	심의 창작준비형 및 창작발표형 : ① 행정심의 ▶ ② 서류심의 ▶ ③ 인터뷰심의	창작준비형 : ① 행정심의 ▶ ② 서류심의(최종) ※ 문학 분야는 예외 창작발표형 : ① 행정심의 ▶ ② 서류심의 ▶ ③ 인터뷰심의													
단원규모	단체 구성원 3인 이상	단체 구성원 2~9인 이하													
사업기간	4월~12월	5월~12월													
활동내용	연 80회 이상 활동(필수)	지원신청 시 월별 활동계획 대비 실제 활동내용에 대한 "실행 과정과 결과"공유													
서울 청년 예술단	활동보고	활동일지 작성 제출	월별 활동보고서(팀단위) 제출 및 선정단체 간 월별 네트워킹												
	교부방식	활동비 : 월 단위 교부신청 ⇒ 월 단위 지급 사업비 : 필요시 교부신청 ⇒ 일시 지급	활동비 : 연 단위 교부신청 ⇒ 월 단위 지급 사업비 : 실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전 교부신청 ⇒ 일시 지급												
정산방식	1개월 단위	4개월 단위													
멘토링	월 1회 멘토링 지원(필수)	선정단체 주도적 멘토링 구성(선택) ※ 희망멘토, 멘토링시기, 멘토링횟수 구성 등													
청년 예술 공간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유형</th> <th>지원금액/1개소</th> </tr> </thead> <tbody> <tr> <td>발표공간제공형</td> <td rowspan="2">1,000만원 ~2,000만원</td> </tr> <tr> <td>발표공간제공 및 자체기획형</td> </tr> </tbody> </table>		지원유형	지원금액/1개소	발표공간제공형	1,000만원 ~2,000만원	발표공간제공 및 자체기획형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유형</th> <th>지원금액/1개소</th> </tr> </thead> <tbody> <tr> <td>발표공간제공형</td> <td>2,000만원 이내</td> </tr> <tr> <td>자체기획형</td> <td>2,000만원 ~5,000만원</td> </tr> </tbody> </table>		지원유형	지원금액/1개소	발표공간제공형	2,000만원 이내	자체기획형	2,000만원 ~5,000만원
	지원유형	지원금액/1개소													
	발표공간제공형	1,000만원 ~2,000만원													
발표공간제공 및 자체기획형															
지원유형	지원금액/1개소														
발표공간제공형	2,000만원 이내														
자체기획형	2,000만원 ~5,000만원														
* 자체기획 사업 : 공간이 주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청년예술인(단체) 연계사업으로 예산 내 최대 2건 구성 가능															

2018년 예술지원사업 공통안내사항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지원신청 부적격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위반행위 단체·개인
- 2017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 기존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년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서울시 및 재단에 통보된 단체·개인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당해연도의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사업 등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예술인복지법」 6조의2(금지행위 등)

1.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영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예술 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다중신청 관련

- 한 신청인 · 단체가 서울문화재단의 각종 예술지원사업에 다중신청 하는 것은 가능하나, 총 선정건수에는 제한있음
 - ※ 단, 동일사업으로는 다중신청 불가
- 단일 사업 내에서는 다중신청 불가
 - (ex. '예술작품지원사업-시각'에 신청할 경우 '예술작품지원사업-다원'에는 신청 불가)
 - (ex. '최초예술지원-창작준비형'에 신청할 경우 '최초예술지원-창작발표형'에 신청 불가)

다중선정 총량 제한

- 한 신청인 · 단체는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공모(1, 2차공모 포함)에 최대 3건까지 선정 가능함
 - ※ 단, 창작공간 레지던시 입주공모는 다중선정 건수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간 중복선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택일하여야 함
 - ※ '예술작품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중복선정 불가
 - ※ '최초예술지원' 선정자와 '서울청년예술단' 구성원 전원은 중복선정 불가

심의위원 공개추천제

-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을 통한 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예술계 현장으로부터 심의위원 적격인사를 추천 받아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 및 심의위원 위촉

예산 책정 및 자부담 관련 안내

- 사업별 전년도 평균지원금액을 참고하여 예산계획을 작성 바람
 - 자부담 편성의 의무는 없음
 - ※ 자부담 편성 여부 및 비율설정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나, 한번 정해진 자부담 비율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 예산 계획 바람
- 예시

지원 신청시 자부담 50% 편성		➤	지원 선정후 자부담(50%)비율 유지	
신청 지원금	자부담		결정 지원금	자부담
800만원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

e나라도움시스템 관련안내

- 청년예술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심의 결과발표 일정 안내

- 청년예술지원 사업별 심의 결과는 2018년 4월 중 발표 예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심의결과 확인 가능

청년예술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예술인 대상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다양한 예술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활동 기반을 조성함

지원신청자격

- (최초예술지원)** 39세(1980.1.1. 이후 출생) 이하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2009.1.1. 이후 데뷔) 이하의 예술인
 - ※ 단, 문학은 39세(1980.1.1 이후 출생) 이하 미등단 작가에 한함
- (서울청년예술단)** 35세(1984.1.1. 이후 출생)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 창작발표 및 교류 공간 제공, 기획사업 운영에 참여 가능한 민간 공연·전시장,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지원대상사업

- 지원장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기타
-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최초예술지원	- 작품 구상을 위한 자료 조사, 창작을 위한 연구, 워크숍 등 발표 전 단계 사전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준비 지원 -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작품 발표를 지원하는 창작발표 지원
서울청년예술단	-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창작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과 상호 협력 플랫폼 조성을 위해 민간 공연·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대상 공간운영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지원규모·내용

- 직접지원(예산) : 200만원 ~ 6,000만원 내외 ※사업 별 상이함
- 간접지원(기반) : 멘토링·비평, 발표공간, 네트워킹, 포럼, 홍보 등

지원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28일(수) - 3월 19일(월) 18:00 *20일간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선정결과발표

- 발표일정 : 4월 중 *예정
- 발표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지원신청서류

사업명	장르	필수제출서류	선택제출서류
최초예술지원	연극/무용 음악/전통 다원/시각	①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에서 작성·제출) ② 활동계획서(지정양식 첨부)	① 동영상 : AVI, WMV, mpeg4 파일 형식으로 3분 이내 첨부 ② 기타 활동증빙자료 : HWP, DOC, PPT, PDF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10p, 100MB 이내) ※ 연극은 공연대본 선택 제출 가능 ※ 시각은 PDF변환된 필수서류만 제출, 필수서류 외 기타 추가파일 업로드 불가
	문학	①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에서 작성·제출) ② 활동계획서 및 작품원고 (지정양식 첨부)	-
서울청년예술단	연극/무용 음악/전통 다원/시각 문학	①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에서 작성·제출) ② 활동계획서(지정양식 첨부)	① 동영상 : AVI, WMV, mpeg4 파일 형식으로 3분 이내 첨부 ② 기타 활동증빙자료 : HWP, DOC, PPT, PDF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10p, 100MB 이내) ※ 시각은 PDF변환된 필수서류만 제출, 필수서류 외 기타 추가파일 업로드 불가
청년예술공간	공통	①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에서 작성·제출) ② 세부사업계획서 (지정양식첨부)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단체 법적 증빙자료 1부	-

※공통사항

- 필수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회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지원신청내용 및 제출된 서류 내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선정자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하며, 증빙서류 불충분 및 자격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장소(규모) 및 사업기간 등 계획 대비 선정 이후 변경 시,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 요함

최초 예술지원

청년예술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사업목적

-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지원신청자격

- 공통요건 :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 창작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래 ① 또는 ②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① 39세(1980.1.1. 이후 출생) 이하 예술인 ② 데뷔 10년(2009.1.1. 이후 데뷔) 이하의 예술인
 - ※ 단, 문학은 39세(1980.1.1. 이후 출생) 이하 미등단 작가에 한함

[유의사항]

- ※ 예술인(개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프로젝트팀의 경우, '대표자'격의 구성원이 개인으로 신청
- ※ 최초예술지원 ↔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전원) 사업 간 중복 선정 시 택 1 필수
- ※ 최초예술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 간 중복 선정 시 택 1 필수
- ※ 최초예술지원 및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두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3회까지 선정 가능

- 분야별 세부요건

분야	세부요건
연극/무용/ 음악/전통/다원	데뷔는 직접 연출/안무/연주/총괄 기획한 작품을 데뷔작으로 인정하며, 졸업 작품 또는 단순 참여 경력 제외함
시각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의 경우, 데뷔 기준은 첫 개인전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 청구전(졸업전시 등)은 제외함
문학	①시, 시조 ②소설 ③문학평론 ④아동·청소년문학(동시, 동화 등) ⑤희곡, ⑥기타 (①~⑥에 포함되지 않는 문학 장르)로 위 세부장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등단 예비작가 ※ 등단 기준 : 국내 신춘문에 및 문학 전문 매체를 통해 등단한 작가

지원신청 부적격자

- 2018년 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적격자 공통안내사항 준용 (p.4 참고)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가능)
 - ※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하며, 해당자는 선정 후 증빙 필수
- 공고일 이전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자
 - ※ 공공지원금 수혜 여부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기준으로 조회하여 1차 확인하며, 그 밖의 다양한 공공지원금은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종합적 판단함.
 -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2017 서울청년예술단」 등 재단이 정한 일부사업의 수혜경험은 허용함.
- 2017년 최초예술지원 선정자 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 후 정산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

청년예술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지원대상사업

- 지원장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총 7개 분야)
- 사업수행기간 : 2018년 3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약 6개월 이내
 ※ 최초예술지원 2차공모는 6월 중 공지 예정이며, 2018년 7월 1일 ~ 12월 31일 진행될 사업에 대해 지원 예정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2018년 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공동안내사항 준용 (p.5 참고)

지원내용

- 직접지원(예산) : 200만원 ~ 1,500만원 ※장르 별 상이함
 ※ 유형(창작준비형 ↔ 창작발표형) 간 다중 신청 불가함

유형	분야	범위	지원규모
창작 준비형	연극/무용/	- 작품 구상을 위한 자료조사, 창작을 위한 연구, 워크숍 등	200만원
	음악/전통/ 다원/시각/ 문학	발표 전 단계 사전준비 비용	*사상금
창작 발표형	연극/무용/	-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1회 이상 작품 발표 비용	500~
	음악/전통/ 다원/시각	(발표 횟수나 기간은 제한 없음) ※ 2017년 최초예술지원 2차공모 창작발표형	1,500만원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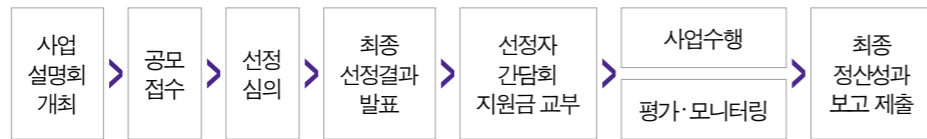
장르별 평균지원금 참고

구분	연극	무용	음악
평균 지원금	11,529천원	11,905천원	8,706천원
구분	전통	다원	시각
평균 지원금	8,679천원	11,722천원	7,051천원

- 간접지원(기반) : 발표공간, 네트워킹, 포럼, 홍보 등

추진절차

- 추진방식 : 연 2회 공모 · 선정 지원
- 주요절차



지원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28일(수) - 3월 19일(월) 18:00 *20일간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서류

분야	구분	제출서류 내용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필수	❶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작성 · 제출(예산계획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필수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❷ 활동계획서 : 지정양식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파일첨부
	선택	❶ 동영상 : AVI, WMV, mpeg4 파일 형식으로 3분 이내 첨부 ❷ 기타 활동증빙자료 HWP, DOC, PPT, PDF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10p, 100MB 이내) ※ 연극은 공연대본 선택 제출 가능 ※ 시각은 PDF변환된 필수서류만 제출, 필수서류 외 기타 추가파일 업로드 불가
문학	필수	❶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작성 · 제출(예산계획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필수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❷ 활동계획서 및 작품원고 : 지정양식에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파일첨부

장르	제출편 수	작품당 분량
시, 시조, 동시	3편	분량제한 없음
소설, 희곡, 평론, 동화, 기타(위에 속하지 않는 문학장르)	1편	

※ 제출하는 작품원고는 다른 매체에 미발표, 미공개 작품만 지원 가능
 ※ 제출원고 편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 ❷는 별도 제출 불가하며, 첨부파일은 총 용량 100MB이내

※공통사항

- ❶ 필수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음
- ❷ 지원신청내용 및 제출된 서류 내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❸ 지원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선정자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하며 증빙서류 불충분 및 자격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❹ 사업장소(규모) 및 사업기간 등 계획 대비 선정 이후 변경 시,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 요함

청년예술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심의절차

유형	분야	범위
창작준비형	연극/무용/ 음악/전통/ 다원/시각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행정사항 확인 - 2차 서류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제출서류 심의
	문학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행정사항 확인 - 2차 서류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제출서류 심의 - 3차 토론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의
창작발표형	연극/무용/ 음악/전통/ 다원/시각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행정사항 확인 - 2차 서류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제출서류 심의 - 3차 인터뷰 및 토론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및 토론심의

심의기준

분야	유형	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연극/무용/ 음악/전통/ 다원/시각	창작준비형 창작발표형	사업계획	창의성	40%	프로젝트 계획의 독창성 및 실험성
		사업실행	실행가능성	30%	프로젝트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사업성과	발전가능성	30%	프로젝트의 향후 발전가능성 및 장르 기여도
		사업계획	창의성	40%	원고의 우수성 및 참신성
문학	창작준비형	사업실행	실행가능성	30%	활동계획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사업성과	발전가능성	30%	향후 발전가능성 및 장르 기여도

선정규모

- 총 선정규모 : 연간 425명 내외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결과발표

- 발표일정 : 4월 중 *예정
- 발표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선정자 의무사항

- 시상금 방식의 지원은 총액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됨
- 선정자의 실 사업수행은 2018년 8월 31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 선정 예술인 프로필,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 등 보도자료/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동의
- 향후 재단에서 주최하는 청년예술지원사업 관련 정보(홍보) 제공 활용 동의
-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서울문화재단 후원 표기
- 선정사업은 추후 사업수행 시 재단이 실시하는 현장평가 등 적극 협조
- 선정사업별 실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문의처

분야	문의처	연락처
연극	서울연극센터	02-743-9328, 9337
무용	서울무용센터	02-304-0093, 9100
음악/전통/다원	문래예술공장	02-2676-4309, 0093, 0052
시각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7, 5995
	신당창작아카데미드(공예)	02-2232-8833, 8844 *시각 '공예' 장르는 신당창작아카데미드에서 운영합니다.
문학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22, 4690
총괄	창작지원팀	02-3290-7075

서울청년 예술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서울청년예술단

사업목적

- 단기 예술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직·간접 지원으로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함

지원신청자격

- 서울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한 35세(1984.1.1. 이후 출생)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유의사항)

※ 단원 구성은 12월까지 지속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한 2~9인으로 한함

※ ①사업자등록증, ②고유번호증 ③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중 1종을 보유한 단체는 <단체명의>로 신청

단, 지원신청 시점에 위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며, 선정 이후에는 ①②③ 중 1종 이상 보유 필수. (단, 지원신청자와 선정 후 단체의 대표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전원) ↔ 최초예술지원 사업 간 중복 선정 시 택 1 필수

※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사업간 중복 선정시 택 1 필수

※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및 최초예술지원 두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3회까지 선정 가능

지원신청 부적격자

- 2018년 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적격자 공통안내사항 준용 (p.4 참고)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대학원생 가능)
 - ※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하며, 해당자는 선정 후 증빙 필수

지원대상사업

- 지원장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총 7개 분야)
- 사업수행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12월 *약 8개월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2018년 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공통안내사항 준용 (p.5 참고)

청년예술지원사업

서울청년예술단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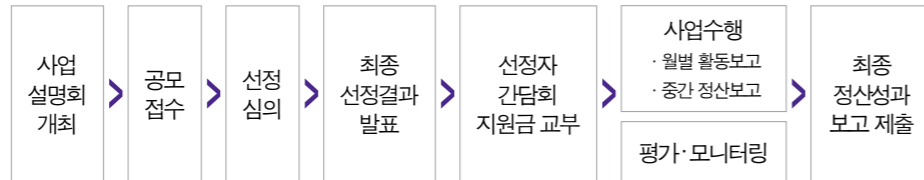
- 직접지원(예산) : ※구성원 규모별 상이함

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활동비 : 단체 구성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금 ※ 활동범위 : 멘토링, 기획회의, 연습, 작품분석, 워크숍 연구, 작품제작 및 발표 등 예술 창작을 위한 고유한 활동 전반 ※ 활동비 지원가능 대상 : 연중 상시적인 단원 기준 (일시적 참여는 사업비 내 사례비로 편성) ex)구성원 3인 기준 산출 예시 -70만원 x 3인 x 8개월	월 70만원/1인 x 구성원수(최대 9인) x 8개월 *지원금
	사업비 : 단체의 창작활동 실현을 위한 비용(대관료, 제작비 등) ※사업범위 :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1회 이상 작품 발표 비용 (문학 분야의 경우 문학 관련 행사 및 출판 가능)	최대 1,500만원/1단체 *지원금

- 간접지원(기반) : 멘토링 · 비평, 발표공간, 네트워킹, 포럼, 홍보 등

추진절차

- 추진방식 : 연 1회 공모 · 선정 지원
- 주요절차



지원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28일(수) - 3월 19일(월) 18:00 *20일간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서류

분야	구분	제출서류 내용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필수	①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작성 · 제출(예산계획 포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필수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② 활동계획서 : 지정양식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파일첨부
	선택	① 동영상 : AVI, WMV, mpeg4 파일 형식으로 3분 이내 첨부 ② 기타 활동증빙자료 HWP, DOC, PPT, PDF 파일 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10p, 100MB 이내) ※ 연극은 공연대본 선택 제출 가능 ※ 시각은 PDF변환된 필수서류만 제출, 필수서류 외 기타 추가파일 업로드 불가

※공통사항

- ① 필수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음
- ② 지원신청내용 및 제출된 서류 내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③ 지원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선정자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하며, 증빙서류 불충분 및 자격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④ 단원 구성, 사업장소(규모), 사업기간 등 계획 대비 선정 이후 변경 시,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 요함

심의절차

분야	범위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행정사항 확인 - 2차 서류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제출서류 심의 - 3차 인터뷰 및 토론회 :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및 토론회심

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계획 적절성	40%	- 활동계획 수행을 위해 단체가 필요한 구성원(역할)을 포함하고 있는가? - 활동계획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가?
실행 실현가능성	30%	- 활동계획의 실현을 위해 구성원별 역할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가? - 활동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성과 발전가능성	30%	- 활동계획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활동계획이 해당 장르에 기여할 수 있는가?

청년예술지원사업

서울청년예술단

선정규모

- 총 선정규모 : 연간 250명 내외(단체별 구성원 포함)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결과발표

- 발표일정 : 4월 중 *예정
- 발표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선정자 의무사항

- 월 활동비는 단체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되며, 대표자는 월 단위 각 구성원에게 지급함
- 선정자의 실 사업수행은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 단체별 월 단위 활동보고서 제출 및 월 1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석
- 중간 활동보고서·정산서(5~8월)분 제출 : ~ 2018년 9월 15일(예정)
- 최종 활동보고서·정산서(9~12월)분 제출 : ~2019년 1월 31일(예정)
- 선정 예술단체 프로필,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 등 보도자료/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동의
- 향후 재단에서 주최하는 청년예술지원사업 관련 정보(홍보) 제공 활용 동의
-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서울문화재단 후원 표기
- 선정사업은 추후 사업수행 시 재단이 실시하는 현장평가, 멘토링 등 적극 협조
- 사업비는 실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문의처

분야	문의처	연락처
연극	서울연극센터	02-743-9328, 9337
무용	서울무용센터	02-304-0093, 9100
음악/전통/다원	문래예술공장	02-2676-4309, 0093, 0052
시각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7, 5995
	신당창작아카데미(공예)	02-2232-8833, 8844
	*시각 '공예' 장르는 신당창작아카데미에서 운영합니다.	
문학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22, 4690
총괄	창작지원팀	02-3290-7075

청년 예술공간 지원

청년예술지원사업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목적

- 민간에서 운영 중인 장르별 예술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예술 창작활동 거점 확충 및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기반과 상호협력 플랫폼 제공함

지원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장르의 청년예술인(단체)들이 창작발표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공연장, 전시장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사업수행기간 : 5월~12월

지원신청자격

-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가진 공간
- 임대차계약서 상 2018년 12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 (단, 임대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청년예술인(단체) 대상 대관료 50% 이상 할인하여 대관할 수 있는 공간 (최소 30일 이상)
- 청년예술인(단체) 연계 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공간 (자체기획형에 한함)
- ※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동일 공간의 연속 선정은 3회까지 가능

* 청년예술인(단체) 기준
 (개인) 39세(1980.1.1. 이후 출생) 이하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 (2009.1.1.이후 데뷔) 이하의 예술인
 (단체) 35세(1984.1.1 이후 출생)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신청 부적격자

- 2018년 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공동안내사항 준용 (p.4 참고)
- 대관전용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자(단체)는 지원가능하나 공간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은 지원 불가
- 정부 및 지자체(한국방송공사 포함)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시설
- 국·공립(도·시·군·구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시설 또는 산하·출연기관(단체)·시설
-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시설
- 방송국, 언론사 및 그 산하 소속 단체·시설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공간
- 개인, 단체가 1개 이상 시설을 운영할 경우 복수 신청 불가
- 유사지원사업을 통한 공간, 동일사업, 동일인력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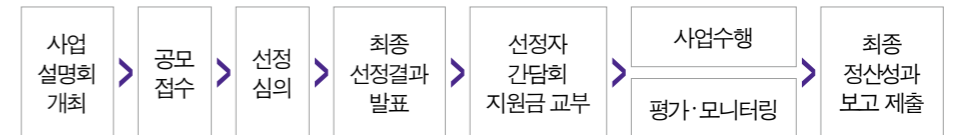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규모
자체기획형	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자체기획사업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2,000만원 ~5,000만원
	※ 공간운영비 2천만원 내외, 사업운영비 3천만원 내외로 책정 가능 ※ 자체기획사업은 공간이 주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청년예술인(단체) 연계 사업으로, 예산 내 최대 2건 구성 가능 ※ 단순 대관 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은 자체기획사업으로 신청 불가	
발표공간제공형	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2,000만원 이내

- 지원유형 중 반드시 택1 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간운영비는 순 임차료, 공간운영자 인건비 지원
 -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관리비를 제외한 순 임차료 지원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법적증빙서류의 대표자명)이 일치하여야 함
- 자체기획형은 공간운영비 2천만원 내외, 사업운영비 3천만원 내외로 책정 가능
 - 자체기획사업은 공간이 주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청년예술인(단체) 연계 사업으로, 예산 내 최대 2건 구성 가능
 - 단순 대관 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은 자체기획사업으로 신청 불가
- 선정 공간 대상 네트워킹, 홍보 등 기반 지원 예정

추진절차

- 추진방식 : 연 1회 공모·선정 지원
- 주요절차



청년예술지원사업

청년예술공간지원

지원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28일(수) - 3월 19일(월) 18:00 *20일간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반드시 '단체'로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단체회원가입 안내

단체회원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회원으로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단체회원가입 시 대표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됨

- 신청 가능 단체 유형은 아래와 같음

- 1) 개인사업자 :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2)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3)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법상의 법인(단체명, 법인번호, 고유번호)
- 4) 공식단체 : 고유번호를 가진 단체(고유번호)

단체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하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향후 회원가입 시 입력한 단체 정보를 기준으로 정산증빙자료 수취 등 사업수행을 진행하게 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유의

-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

- ❶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작성 · 제출(예산계획 포함)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추가
- ❷ 세부사업계획서 : 지정양식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PDF 형식으로 파일첨부
- 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파일첨부
- ❹ 단체 법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파일 첨부

※공통사항

- ❶ 필수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회에서 탈락할 수 있음
- ❷ 지원신청내용 및 제출된 서류 내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❸ 공간운영(규모), 사업기간 등 계획 대비 선정 이후 변경 시,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 요함

심의절차

1차	2차	3차
재단 (예비)행정심의	전문가 서류심의	전문가 현장실사 및 심층심의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행정사항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검토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의	신청공간 현장 실사(해당 시) 및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및 토론심의

심의기준

심의기준	주요 심의내용	가중치	
		자체 기획형	발표공간 제공형
공간운영 현황	· 보유 시설 및 공간이 예술 장르별 발표 및 교류공간으로 활용되기에 유동성과 적합성을 갖추었는가 · 공간이 활발하게 운영 및 가동되고 있는가 · 지원주체는 공간운영 및 시설유지의 역량을 갖추었는가	20%	40%
공간운영 계획	· 2018년도 공간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청년예술인(단체)와의 협업의지와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홍보 및 관객개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0%	40%
자체기획사업 운영	· 청년예술인(단체)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는가 · 사업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사업 참여 예술인(단체)의 참여도는 확인된 수준인가 ·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가	40%	-
청년예술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 청년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청년예술교류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가 · 청년예술플랫폼으로 발전할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20%	20%

선정규모

- 총 선정규모 : 연간 45개소 내외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결과발표

- 발표일정 : 4월 중 *예정
- 발표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공간의 실 사업수행은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 공간현장실사 참여 필수 : 사업기간 중 1회(예정)
- 사업기간 중 서울문화재단 주최 네트워킹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선정공간 관련 이미지 등 보도자료/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동의
- 청년예술인 또는 단체 대상 대관 시 홍보 등 사업지원 적극 협력

문의처

창작지원팀 (02-3290-7165)

서울문화재단 부조리통합신고센터

비리신고

HOT Line: 02-3290-7151

홈페이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 기관소개 ▶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경영 ▶ 부조리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문의

분야	문의처	연락처
연극	서울연극센터	02-743-9328, 9337
무용	서울무용센터	02-304-0093, 9100
음악/전통/다원	문래예술공장	02-2676-4309, 0093, 0052
시각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7, 5995
	신당창작아케이드(공예)	02-2232-8833, 8844 *시각 '공예' 장르는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운영합니다.
문학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22, 4690
총괄	창작지원팀	02-3290-7075